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제157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18:00
- 장소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실
- 성원 : 재적 이사 7인, 감사 2인 중 이사 6인, 감사 1인 참석
 - 참석이사 - 김동범, 김정열, 한명섭, 허영진, 정종문, 김동호(이상 이사 6인)
 - 참석감사 - 한택근(이상 1인)
 - 불참이사 - 엄종숙(이상 1인)
 - 불참감사 - 김대현(이상 1인)
 - 배 석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혜미 관장, 형은경 사무국장

개회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인 대표이사 김동범은 상임이사 김동호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고, 상임이사는 재적이사 7인 중 이사 6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5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개회시간 18:00).

보고안건 제1호: 제156차 이사회 결과보고

의장은 제1호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상임이사에게 요청하다.
상임이사가 보고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이 없자, 보고안건 1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보고안건 1호가 보고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보고안건 제2호: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방향

의장은 제2호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요청하다.
형은경 사무국장이 보고자료대로 보고하다.

대표이사는 방향성과 관련 사업의 구성이 잘 되었다고 말하다. 허영진 이사는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고려와 시각 이외의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다. 한명섭 이사는 사업방향과 전략, 그리고 사업구성이 잘 되었다고 하고, 장애유형의 다양성을 도모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김정열 이사는 중점전략과 방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복지관 운영과 사업계획에 잘 반영할 것을 말하다.

의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이 없자, 보고안건 2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보고안건 2호가 보고내용에 추가의견을 더해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1호: 2025년 법인 결산(안)

의장은 심의안건 1호 심의 전, 심의안의 일괄 상정을 묻고,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은 심의1호 내지 심의5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의 제안이유 설명을 상임이사에게 요구하고, 회의자료대로 상임이사가 설명하다.

의장은 감사에게 감사 결과 보고를 요청하다. 한택근 감사는 법인과 복지관의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대로 보고하다. 감사보고에 대해, 의장은 감가상각과 비품의 결손 처리는 차후 회계에 반영하기로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다, 또한, 의장은 경기지방노

동위원회가 압류 중인 승합차량은 사실상 폐차 상태로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기지노위에 해제 요청을 하기로 하다. 의장은 가평 부지와 건물은 매각보다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한다. 정종문 이사는 해당 건물과 부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하다. 이에 다른 이사들도 동의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원안을 승인할 지 여부를 묻다, 김정열 이사가 승인을 동의하고, 한명섭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자 심의안건 1호에 대한 승인여부를 물어 모든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 2025년 법인 결산(안)이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2호: 2025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결산(안)

의장은 심의안건 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복지관 사무국장이 심의안건 제2호를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2호에 대한 의견을 묻다. 별 의견이 없자. 의장은 승인 절차를 요구하다.

한명섭 이사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심의의안 제3호: 2026년 법인 1차 추경 예산(안)

의장은 심의안건 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상임이사가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김정열 이사가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전제가 되어 있는지 묻자, 상임이사는 현재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하다, 의장은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집행할 것임을 확인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3호에 대한 의견을 묻다. 별 의견이 없자. 의장은 승인 절차를 요구하다.

의장은 법인 2026년 법인 1차 추경예산(안)의 승인 절차 진행하다. 김정열 이사가 승인을 동의하고, 허영진 이사와 정종문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3호의 승인을 묻고, 모든 이사들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3호 2026년 법인 1차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4호: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1차 추경 예산(안)

의장은 심의안건 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추경예산(안)을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의장은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승인절차 진행하겠다고 하다. 허영진 이사가 승인을 동의하고 한명섭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4호를

원안대로 승인할지를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4호, 2026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5호: 법인 정관 개정(안)

의장은 심의안건 5호의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상임이사가 정관 개정의 사유를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상임이사는 당초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반려 의견에 따라, 목적사업 표시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재활지원사업 만으로 한정하고, 폐업이 확인된 프라미스랜드사업단 및 루디아의집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다.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개정 사항을 말한다.

- 제1조(목적)은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및 자립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함.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②항에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의 ‘삼학로’를 ‘삼학사로’로 수정함. “루디아의집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오목골길 8-47”과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프라미스랜드사업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로 19길 27(삼전동)”를 삭제함.
- 제4조(사업의 종류)에서, 3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 삭제함.
- 제25조(이사회 소집) ③항을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에서, ①항을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하 1호 내지 6

호를 삭제함.

- 제31조(조직) ③항에서, 2호와 3호를 삭제하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산하시설을 둔다. 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로 수정함.
- “부칙(2026. 3. 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함.

의장은 이상과 같이 개정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다. 의장은 의결 절차를 진행하다. 허영진 이사가 수정된 정관 개정안의 의결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와 정종문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수정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지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5호 법인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기타 안건 

의장은 그 밖의 논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한택근 감사가, 다음 회의부터는 감사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순서에 별도의 감사보고 순서를 마련할 것과, 이사회는 의결기구이므로 ‘심의안건’을 ‘의결안건’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 및 이사 전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다.

의장은 그 밖의 논의 사항이 있는지 물어, 모든 이사가 의견 없음을 말하다. 추가 논의 사항이 없자, 의장이 폐회 동의를 구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참석한 이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57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 19:20)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들과 감사는 날인하다.

2026. 3. 25.

대표이사 김 동 범 (인)

이사 한 명 섭 (인)

이사 정 중 문 (인)

감사 한 택 근 (인)

이사 김 정 열 (인)

이사 허 영 진 (인)

이사 김 동 호 (인)

감사 김 대 현 (인)

